

규약 정정표

시행일 : 2017 년 1 월 24 일(예정)

• 프랭클린 포커스 증권 자투자신탁(주식)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	비고
제 3 조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)	④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 구로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. 1.~10. (생략) 11. (추가)	④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 구로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. 1. ~10. (현행과 같음) 11. CLASS C-W 수익증권 : 판매회사의 일임 형 종합자산관리(wrap)계좌를 보유한 자, 특 정금전신탁	
제 10 조(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)	①집합투자업자는 제 6 조 및 제 7 조의 규정 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 1. ~10. (생략) 11. (추가)	①집합투자업자는 제 6 조 및 제 7 조의 규정 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 1.~10. (현행과 같음) 11. CLASS C-W 수익증권	CLASS C-W 신설
제 25 조 의 2(수익 증권의 전 환)	⑥ 제 41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 우 수익증권 환매에 따른 환매수수료를 징구 하지 아니한다. 1.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의 전환을 위하여 환매청구하는 경우 2. 수익증권을 전환한 후 환매청구하는 경우 . 다만, 전환 후 추가 납입분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	(삭제)	환매수수료 삭제
제 39 조 (보수)	③ (생략) 1. ~10. (생략) 11. (추가)	③ (현행과 같음) 1. ~10. (현행과 같음) 11. CLASS C-W 수익증권 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0.70%	CLASS C-W 신설 및 CLASS C-I 삭제

		<p>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0.00%</p> <p>다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0.05%</p> <p>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0.025%</p>	
<p>제 41 조 (환매수수료)</p>	<p>①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(제 26 조 제 2 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)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(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)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한다.</p> <p>② 환매수수료는 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(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, 이하 본 항에서 '이익금'이라 한다)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.</p> <p>[CLASS A, CLASS S 수익증권]</p> <p>1. 30 일 미만 : 이익금의 70%</p> <p>2. 30 일 이상 90 일 미만 : 이익금의 30%</p> <p>3. 90 일 이상 : 없음</p> <p>[CLASS A, CLASS S 수익증권을 제외한 다른 수익증권]</p> <p>1. 90 일 미만: 이익금의 70%</p> <p>2. 90 일 이상: 없음</p> <p>③ 판매회사는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 51 조의 규정에 의한 “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”에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환매수수료의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.</p> <p>④ 판매회사는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도</p>	<p>이 투자신탁은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.</p>	<p>환매수수료 삭제</p>

	<u>불구하고 제 25 조의 2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 전환의 경우 제 25 조의 2 제 6 항을 적용한다.</u>		
제 43 조 (신탁계약의 변경)	<u>④ 수익자는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부 터 1 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 하고 <u>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고, 이 경우 제 41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.</u></u> 다만, 제 3 항 및 제 5 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<u>④ 수익자는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부 터 1 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 하고 <u>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.</u></u> 다만, 제 3 항 및 제 5 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
제 45 조 (집합투자 기구의 해 지)	<u>③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신탁계약을 해지하 는 경우에는 제 41 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매 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.</u> <u>④ (생략)</u>	<u>③ (삭제)</u> <u>③ (기존과 동일, 번호이동)</u>	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
<부 칙> 제 1 조(변 경계약의 시행일)	<u>(추가)</u>	<u>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2017년 1월 일부터 시행한다.</u>	